

판결공시제도와 추후보도청구권

이 석 연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I. 서언

최근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서울신학대학의 후기대학입시문제지 도난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사건발생 이튿날 자백만을 근거로 동 대학 경비원 정모씨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발표하였다. 언론매체(mass media)가 앞을 다투어 정씨의 사진과 함께 이를 대서특필하였음은 물론 정씨의 과거행적까지 들추면서 그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정씨의 범행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자백마저 일관성을 잃게 되자 결국 정씨가 3년전에 범한 업무상 횡령혐의로 별건구속하여 기소하였으며, 지금까지(1992. 3. 1.) 위 시험지 도난사건의 수사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만약 최종수사 결과 정씨가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거나 또는 단순한 종범에 불과하다면 이미 산산히 조각난 정씨의 인격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위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형사피의자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언론매체의 상업주의에 편승한 센세이셔널한 보도태도로 인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여론의 표적이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굳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추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취급당한 자가 후에 무고함이 판명된 때에는 그자의 침해된 인권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법제상 이러한 피의자,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크게 형법상의 「판결공시제도」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약칭한다)상의 「추후보도청구권」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이며, 후자는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침해된 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인 바, 이 글에서는 양 제도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그 제도적 가치, 운용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하여 본다.

II. 판결공시제도

1. 판결공시제도의 의의

판결의 공시는 형사피해자의 이익이나 형사피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제도로서 현행 형법 제 58 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제 1 항의 경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짐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예컨대, 피고인이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결의 공시로서 그 적시 또는 선고된 사실이 전혀 근거없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사회일반에게 주지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진실성 또는 결백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비용은 가해자였던 피고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판결공시의 취지선언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제 2 항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의 측면에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위한 판결의 공시를 인정한다. 비록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는 있지만 (헌법 제 27 조 제 4 항), 일단 형사피고인이 되면 사회일반인들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그 피고인을 범죄자로 숙단하거나, 그러한 선입견을 갖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시의 판결의 공시는 당해 피고인이 범죄자 또는 전과자라는 추측을 없애고 죄없는 선량한 사람임을 입증해 줌으로써 피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무죄추정의 법리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판결의 공시는 피고인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는 많으나 판결공시취지의 선언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440 조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재심피고인의 명예회복 방법으로 무죄판결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판결의 공시는 무죄선고를 받은 자의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재심판결을 한 법원의 의무이다. 판결공시제도는 현행 형법의 형벌제도 중 한 특색을 이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스위스 형법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즉 스위스 형법 제 61 조는, 「① 법관은 공공의 이익이나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의 공시를 명한다. ② 법관은 공공의 이익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또는 고발인의 부담으로 무죄판결의 공시를 명한다. ③ 피해자, 고소인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결의 공시는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판결공시의 종류와 범위는 법관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한 판결의 공시 중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추후보도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무죄판결의 공시이다. 판결공시제도라 함은 보통 무죄판결의 공시를 말하며 대법원도 이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있다. 1) 이하 무죄판결의 공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판결공시의 절차(내용)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결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때(형사소송법 제 325 조)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어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형소법 제 326 조)에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할 수 있다. 판결공시 여부가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이 특색이다.

판결의 공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에규에도 같은 취지에서 판결공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판결공시의 선고가 있고 그 판결이 제 1 심에서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당해 법원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에 1 회 공시를 하여야 한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위 공시의 판결이 확정된 때(항소기각이든 새로 공시의 선고를 하였든)에는 판결등본과 소정양식의 송부서를 제 1 심법원으로 송부하며

제 1 심법원이 그 송부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위의 신문지 공시절차를 밟는다. 2)

공시의 내용은 소정양식에 따라야 하는 바, 대법원에규에 의하면 극히 추상적이고 간단한 문구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위 피고인은 ○○죄로 기소되었으나(증거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과 같다. 그러나 재심에서의 무죄판결의 공시는 판결의 주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전문을 공시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3) 다만 판결의 이유가 특별히 장문인 경우는 명예회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써 판결이유의 요지를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공시비용은 물론 국고에서 지출되나 형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소송비용 부담절차에서 고소인 고발인에 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에는(형소법 제 188 조) 그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형사보상법상의 보상결정의 공시

판결공시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별개의 절차에 의해서 규율되는 제도로서 형사보상법 제 24 조의 보상결정의 공시제도가 있다.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심리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에 그 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28 조). 이러한 형사보상제도는 원래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이유가 없는 자를 국가가 그 형사사법의 과오로 말미암아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그 손실을 주로 물질적인 면에서 보상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4)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란 무죄의 재판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 26 조). 무죄의 재판은 일반 형사절차에서 뿐만이 아니라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형사보상법제 1 조 제 2 항).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사실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구금된 때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한 경우를 말한다(형사보상법 제 26 조 제 1 항). 다만 불기소처분 중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한 것은 피의자의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기소되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가 한다. 5)

형사보상법 제 24 조는 보상결정의 공시에 관하여, 법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 주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2 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 회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청구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그 기각결정을 공시하여야 한다(동법제 19 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도 보상결정의 공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 28 조).

보상결정의 공시(특히 관보공시)는 필요적 공시라는 점에서 판결공시제도와 차이가 있다. 또한 보상결정의 요지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보도내용이나 무죄 판결의 내용을 공시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불구속재판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보도로 인한 명예회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무죄판결의 공시와 다르다. 그리고 보상결정의 공시는 관보 및 2 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한하여 각 1 회 게재될 것이므로 실제로 보도한 매체 전부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광고란에 게재될 것이므로 그 효과에 있어서도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점(이 점은 판결공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다)에서 후술하는 추후보도청구권과도 다르다.

참고로 1990 년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건수는 총 133 건으로 그 중 119 건에 대하여 보상결정이 있었으나 관보가 아닌 일간신문에 보상결정이 공시된 것은 6 건에 지나지 않았다. 6)

4. 판결공시제도의 운용현황

판결공시제도가 공소의 제기로 인하여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가치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법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하여 사문화되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의 법관들은 이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이다. 판결공시제도가 형법에 도입된 지 30 년이 지난 1983 년에야 대법원은 뒤늦게 「판결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법관들의 무관심과 사법부의 미진한 예산책정으로 판결이 공시된 예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반면 90 년 한해 동안의 무죄사건 연별인원수는 1 심 무죄 478 건, 지법항소심 무죄 257 건, 고법 무죄 75 건 등 총 800 여건에 이르고 있다. 8) 이와 같은 제도의 유명무실화는 공시여부가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데서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의 이에 대한 인식부족 및 권리의식의 저하도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고양된 마당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제도의 공신력 문제로까지 비쳐질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판결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하였으나 9) 실제 금년도에 재심 및 무죄판결공시를 위한 책정예산은 불과 262 여만 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중앙일간지 게재의 신문광고료 7건 정도의 비용밖에 되지 않아 10) 결국 판결공시제도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판결공시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공시제도로 개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형법 제 58 조의 판결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추후보도청구 등의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면서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생각된다. 11)

III. 추후보도청구권

1. 추후보도청구권의 제도적 의의

추후보도청구권이라 함은 정기간행물,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 의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또는 형사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해당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보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87. 11. 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별도로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하여 범죄사실의 보도라는 공익적 차원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상충되는 법익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매체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서의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정간물법 제 24 조는 추후보도청구권이라는 제목 하에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방송법도 방송에 관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청구 중재 및 법원의 심판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간물법상의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 42 조)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에 의한 인권침해는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바, 특히 매스 미디어의 상업주의에 기인한 센세이셔널리즘의 경향은 범죄보도에 있어 공공의 이익 즉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방위라는 이름 하에 개개인의 인격을 여지없이 짓밟는 경향이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 일단 언론매체에 의하여 범죄자로 보도되면 여론의 위세에 눌려 후에 범죄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격은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언론매체는 범죄기사의 주인공에 대한 무고함을 보도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일반국민들도 또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전제 하에 언론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한 태양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형식을 빌은 추후보도청구권을 언론피해자에게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의 구현에 본 청구권의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자신과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내지 해명권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언론매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광의의 Access 권과는 별개 차원의 Access 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²⁾ 그리고 이러한 반론권 내지 해명권의 이론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권의 보호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 점은 정정보도청구권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추후보도청구권의 입법예로서는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 제 10 조 내지 제 20 조에 자세한 규정이 있으며, 특히 동법 제 10 조는 형사절차의 경과에 관한 추후보도라는 제목 하에 「① 정기적인 언론매체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도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해당 언론매체는 그에 관하여 무료로 보도하여야 한다. ② 추후보도는 그 내용이 요구된 권리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며 관계된 보도에 쓰여진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정간물법상의 추후보도청구권은 위 규정을 모델로 한 것이다.

2.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현행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행사할 수 있다.

(1)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을 것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먼저 언론매체에 의해서 특정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예이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면 구체적으로 형사상의 조치를 받기 전이라도 추후보도청구권이 성립한다.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은 형법 및 특별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이나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행정상의 징계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¹³⁾

(2)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을 것

수사기관에 의해서 내사에 착수되었다거나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도된 때이다. 구속영장이 청구 또는 발부되었다거나 피의자로 소환 받았다는 보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나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의 보도의 경우에 도 추후보도청구권이 성립한다.

보도당시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에 부합하였는가의 여부는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 당시에 혐의있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또한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무혐의나 무죄 등으로 판명되면 다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¹⁴⁾

(3)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 되었을 것

먼저 내사단계에서 불입건(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혐의가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분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으로서 혐의없음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고 공소권 없음 및 죄가 안됨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나 기소중지처분은 제외된다 하겠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검사가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는 위헌적인 검찰권의 행사인 만큼 15) 이때에는 당연히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법원의 재판으로는 무죄판결(형소법 제 325 조)이 대표적인 경우로서 심리결과 형사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이다. 해석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요한다. 경합범(형법 제 37 조)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형법 제 40 조)과형상 일죄의 일부분이 무죄로 된 때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재판결과 보도된 혐의 내용과는 달리 죄질이 가벼운 범죄로 판명된 경우, 예컨대 살인죄로 보도되었으나 과실치사로 밝혀지거나 상해 또는 폭행치상으로 보도되었으나 과실상해로 밝혀진 때에는 보도된 범죄는 무고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인의 통념이므로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6)

면소판결(형소법 제 326 조)이나 공소기각의 재판(형소법 제 327 조, 제 328 조)의 경우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특정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소년법 제 68 조) 특정성을 요하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질 것

이 요건은 추후보도청구권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예외 사유가 준용된다(정간물법 제 20 조 제 3 항) 첫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부정된다. 예컨대, 언론매체에서 범죄혐의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다고 이미 보도한 경우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경과 보도와 동시에 당해절차가 무혐의나 무죄 등으로 끝났다고 보도한 경우 등이다.

둘째, 청구된 추후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나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는 주장 내용이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서의 특정인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의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3.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에 관하여는 정간물법 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동법 제 20 조 제 3 항) 여기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특이한 사항만 살펴본다.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당해 형사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 월 이내이다(정간물법 제 20 조 제 1 항). 따라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 월 이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추후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추후보도청구권이 있어서도 청구인은 발행인 등에 대한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중재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때에는 정간물법 제 18 조 제 1 항과의 관계상 형사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발행인 등에게 청구하였다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14 일이내인 한 위 절차 종결일로부터 1 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중재신청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

당해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한 서면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제 10 조 제 3 항)은 「추후보도의 정당성은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등본의 제출 또는 특별한 직무상 증명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증명서의 신청에 의한 발급은 공소취소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타의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증명서의 발급의무를 지우고 있다.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등본 이외에 판결확정증명도 구비하여야 한다.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사건 사무규칙 제 55 조 제 3 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의 이유가 기재된 결정문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에게만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형소법 제 259 조) 피의자에게는 불기소이유 고지제도가 없으나 모든 국민은 헌법상 알권리의 내포로서 자신의 형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8) 이를 통하여 불기소결정이유를 교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문 등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결정문 등본의 승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게재를 요구하는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권리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정간물법 제 20 조 제 2 항) 정정보도의 범위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점과 대비된다.

IV.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매체의 범죄관련보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써 형법상의 판결공시제도를 흡수 대체할 만한 가치를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추후보도청구권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입법화된 데다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록 범죄혐의로부터는 일응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론재판의 표적이 되었다는 심리적 위압감에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열악함마저 겹쳐,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한 언론기관을 비롯한 사회일반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하겠다.

그리고 추후보도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된 몇 건의 사례를 보면 19) 모두 구속된 신청인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추후보도를 청구한 것으로서 법원의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된 경우에 추후보도를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공시제도가 그 운용과정에서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피고인의 명예회복수단으로서의 추후보도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망된다 하겠다. □

주

- 1) 대법원예규 1983. 2. 24 형사 제 34 호, 판결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송형 83-3).
- 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545 면.
- 3) 백형구 등, 「주석형사소송법(하)」, 415 면 이선중 등, 「주석형사소송법」, 609 면.
- 4)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0, 503 면.
- 5) 신동운,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서울대학교법학」 31 권 3·4 호, 1990, 164 면.
- 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1, 202-203 면 및 동아일보 1992. 1. 9.자 22 면.
- 7) 법률신문 1992. 2. 13 자.
- 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0, 345-346 면.
- 9) 동아일보 1992. 1. 9 자 22 면.
- 10) 법률신문 1992. 2. 13 자.
- 11)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형법개정시안(1991. 12)에서는 판결공시제도(형법 제 58 조)를 폐지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 12) 허영, 「한국헌법론」, 1990. 528~530 면.
- 13) Hartmann-Rieder, Mediangesetz, 1985.S.94.
- 14) 박용상, "새 정기간행물법상의 정정·추후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 제도(상)", 「대한변호사협회지」, 1988년 3 월호, 51 면.
- 15) 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 헌마 56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참조.
- 16) 박용상(위의 논문), 52 면.
- 17) 박용상, "새 정기간행물법상의 정정·추후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 제도(하)", 「대한변호사협회지」, 1988년 4 월호, 29 면.
- 18)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일부인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서 이를 거부한 행위를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1. 5. 13 선고 90 헌마 133 결정).
- 19) 언론중재위원회, 「1989년도 연차보고서」, 130~139 면:동 「1990년도 연차보고서」, 299~309 면 각 참조.

- 전북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법학박사)
- 행정고시(제 23 회), 사법시험(제 27 회) 합격
- 저술 : 「형법총론예해」(대왕사 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연구」,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고찰」 등
-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동국대 법대 강사